



## 재해 개요

- 2019.7.1.(월) 경기도 고양시 소재 ○○송전선로구간 철탑(154kV)에서 조류착지 방지장치 설치를 위해 중간암의 끝단으로 이동하던 상부암 활선에 신체가 접촉 또는 접근한계거리(170cm) 이내로 접근하여 공기의 절연파괴로 인해 발생한 섬락으로 감전 및 추락(높이≒40m)하여 사망한 재해임



## 재해 발생 원인

- **송전선로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**
  - 송전선로에서 조류착지 방지장치 설치작업 시 감전될 우려가 있으나 154kV 송전선로에 대한 정전조치 미실시
- **송전선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미준수**
  - 송전선로(154kV)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 또는 접근한계거리(170cm) 이내로 접근함



## 재해 예방 대책

- **송전선로에서 작업 시 해당 전로 차단 또는 접근한계거리 준수**
  - 송전선로에서 조류착지 방지장치 설치작업 시 154kV 송전선로에 대한 정전조치 실시
  - 송전선로(154kV) 정전작업이 어려운 경우, 충전부에 재해자의 신체가 접촉 또는 접근한계거리(170cm) 이내로 접근 시 공기의 절연파괴로 인한 섬락으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한계거리 밖에서 조류착지 방지장치 설치 또는 이동하여야 함
- **추락방지용 및 안전대 착용 관리·감독 철저**
  - 조류착지방지장치 설치작업 또는 이동하면서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수평이동봉에 걸도록 관리·감독 하여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